

서울특별시 마포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| | |
|----------|---------|
| 의안 번호 | 14 - 32 |
|----------|---------|

제출년월일 : 2014. 3. .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1. 개정이유

교통불편민원이 신고된 버스, 택시 등에 대한 법령위반 여부를 심의하는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의 공정성을 위하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운송사업조합 임직원을 제외하기 위한 근거를 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심의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이해관계자인 버스, 택시, 화물 등 운송사업조합 임직원을 심의위원에서 제외함을 명시(안 제3조제2항)
- 나.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 규정 신설(안 제3조의2 신설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
 - 1)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26조(운수종사자의 준수 사항)
 - 2)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11조(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)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- 라. 규제여부 : 해당사항 없음

4. 기타사항

가. 입법예고 : 2014. 2. 13. ~ 3. 5 (제출의견 없음)

나.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 자율평가 결과 : 권고사항 있음

- 1) 관련조문 : 제4조(임기) 제2항
- 2) 평가기준 : 이해충돌 가능성
- 3) 검토결과 : 이해충돌 방지장치 마련(위원회 위원의 해촉규정에 제3조의2제1항 위반사항을 포함)
- 4) 조치사항 : 권고안 반영(제4조제2항제5호 수정)

| 구청장 방침 | 심의회 상정안 |
|--|---|
| 제4조(임기) ① (생략) ② 구청장은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 1. ~ 4. (생략) 5. 제3조의2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| 제4조(임기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1. ~ 4. (현행과 같음) 5. 제3조의2----- ----- |

다. 2014년 제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·규칙심의회 심의의결 (2014.3.18)

라.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서울특별시 마포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이 조례는 교통민원신고 사항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위원회”를 “서울특별시 마포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”로, “교통불편민원신고”를 “교통민원신고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“제반 사항”을 “사항”으로 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각1인을 포함하여 10인”을 “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”으로, “구성 한다”를 “구성한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해당하는 자”를 “해당하는 사람”으로, “위촉하는 자로 한다”를 “위촉한다”로 하며,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심의의 공정성을 위하여 운송사업조합 임직원은 제외한다.

제3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소비자보호단체, 직능단체 및 시민단체 임직원

제3조제2항제2호를 삭제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“갖춘 자”를 “갖춘 사람”으로, “인정하는 자 2인”을 “인정하는 사람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4.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

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조의2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

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, 위원장은 위원 본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위원을 심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.

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,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.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
제4조제1항 전단 중 “1회에 한해”를 “한 차례만”으로 하고, 같은 항 후단 중 “공무원인 경우”를 “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”으로, “기간”을 “기간으로 하며,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단체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구청장은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1.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

2.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,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

3. 위원이 품위손상 또는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
 4. 위원 본인이 해촉을 원할 때
 5. 제3조의2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
- 제5조제1항 중 “통할 한다”를 “총괄한다”로 한다.
- 제6조제1항 중 “월1회”를 “월 1회”로 한다.
- 제7조 중 “1인”을 “1명”으로 한다.
- 제8조제1항 중 “아니된다”를 “아니 된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소송”을 “위원회의 위원 및 간사는 소송”으로 한다.
- 제11조 중 “위원중”을 “위원 중”으로, “위원에 대하여”를 “위원에게는”으로, “범위 안에서”를 “범위에서”로 한다.
- 제12조 중 “시행에 관하여”를 “시행에”로 한다.

부칙

- 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제2조(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적용례)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제3조제2항에 따라 새로 위원을 위촉(연임을 포함한다)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② 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통지도과장이 되며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.

<단서 신설>

- 1. 직능단체 및 시민단체 임직원 2인
- 2. 버스, 택시, 화물 등 운송사업 조합 임직원 2인
- 3. 교통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갖춘 자 중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2인
- 4.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의원 2인

<신 설>

② -----

----- 해당하는 사람 -----

----- 위촉한다. 다만, 심의의 공정성을 위하여 운송사업조합 임직원은 제외한다.

- 1. 소비자보호단체, 직능단체 및 시민단체 임직원

<삭 제>

3. -----
----- 갖춘 사람 -----
----- 인정하는 사람

- 4.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

제3조의2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

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, 위원장은 위원 본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위원을 심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.

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

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,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.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
제4조(임기)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. 다만 공무원인 경우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.

② 위촉위원이 그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본인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촉할 수 있으며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4조(임기) ① -----
----- 한 차례만 -----
-----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-----
기간으로 하며,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단체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-----.

② 구청장은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1.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
2.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,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

제5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 한다.

② (생략)

제6조(위원회 운영) ① 위원회는 월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기를 따로 정하여 개최할 수 있다.

②·③ (생략)

제7조(간사)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, 간사는 운수관리팀장으로 한다.

제8조(비밀준수) ① 위원회의 위원 및 간사는 위원회에서 그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

수행하기 어려울 때

3. 위원이 품위손상 또는 장기 불참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

4. 위원 본인이 해촉을 원할 때

5. 제3조의2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

제5조(위원장의 직무) ① -----

----- 총괄한다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6조(위원회 운영) ① -----
월 1회 -----

-----.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제7조(간사) -----
----- 1
명-----
-----.

제8조(비밀준수) ① -----

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② 소송 등에 의한 출석요구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인의 신원을 적극적으로 보호하여야 한다.

제11조(수당)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12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----- 아니 된다.

② 위원회의 위원 및 간사는 소송 -----

-----.

제11조(수당) ----- 위원 중 ----- 위원에게는 ----- 범위에서 -----
-----.

제12조(시행규칙) ----- 시행에 -----
-----.